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44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사용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for the use of modified atmosphere
treatments as phytosanitary measures

(2021)

FAO/IPPC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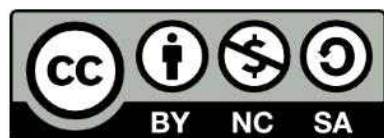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21. *Requirements for the use of modified atmosphere treatments as phytosanitary measure*.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44. Rome. Published by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21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4 (한국어 번역)"

"© FAO, 1995–2021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2014-04 CPM-9이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 사용을 위한
요건 주제를 사업 프로그램에 추가 (2014-006)

2014-05 기준위원회(SC)가 작업지시서를 수정

2014-11 SC가 작업지시서 62(식물위생조치로서 식물위생 소독처리의
사용을 위한 요건)의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e-decision을 통하여
승인(2014_eSC_Nov_06)

2015-05 SC가 작업지시서 62 승인

2015-08 TPPT 회의 (연기됨)

2017-07 TPPT가 초안 수정

2018-02 TPPT 영상회의에서 초안 승인

2018-05 SC가 초안을 수정하고 1차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2018-07 1차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2019-02 간사가 초안을 수정

2019-05 SC-7이 수정하고 2차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2019-07 2차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2019-11 SC는 초안을 수정하고 CPM 채택을 위하여 승인

2021-03 CPM-15가 기준을 채택

ISPM 44. 2021.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 사용을 위한 요건.
로마, IPPC 사무국, FAO.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21-04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배경

생물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요건

1. 소독처리의 목적
2. 소독처리의 적용
 - 2.1 소독처리 지표
3.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밀폐 장소(enclosure)
4. 소독처리 지표 측정
 - 4.1 가스 농도 측정
 - 4.2 온도 측정과 지도화
5. 소독처리 시설의 적정한 시스템
 - 5.1 소독처리 업체 허가
 - 5.2 모니터링과 감사
 - 5.3 소독처리 후 감염과 오염 방지
 - 5.4 레이블링

- 6. 문서화
 - 6.1 절차의 문서화
 - 6.2 기록 유지
 - 6.3 NPPO에 의한 문서화
- 7. 검사
- 8. 책임

채택

이 기준은 2021년 3월, 15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이 기준은, 소독처리 업자들에 대한 허가(authorization), 모니터링과 감사를 포함하는,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제어된(controlled) 대기 소독처리 포함)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NPPO들에 제공한다.

이 기준은, 특정 품목들의 특정 규제병해충을 위한 특정 스케줄과 같은, 특정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식품류의 부패 최소화 또는 다른 품질 관련 조절된 대기 사용과 같은, 비식물위생 목적을 위한 조절된 대기 사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식물위생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이 기준은,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와 이들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설명한다. 밀폐 장소, 소독처리 절차와 소독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소독처리 적용의 운영 조건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기준은, 소독처리 업자들을 허가, 모니터링과 감사하는 지침을 NPPOs에 제공한다. NPPOs와 소독처리 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기술되어 있다.

배경

이 기준은, 특히 ISPM 28(규제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 소독처리) 하에 채택된,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 적용을 위한 공통적 (generic)인 요건을 제공한다.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대상 병해충이 사멸하는 대기를 만들기 위하여, 주위 공기 중 가스 농도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소독처리 환경의 이산화탄소 (CO₂) 함량 증가 (고탄소), 또는 산소(O₂) 함량 감소(저산소 또는 무산소) 또는 두가지 모두를 통하여 달성된다. 제어된(controlled) 대기 소독처리는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한 종류이다.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온도와 습도 같은 다른 요인들의 조절과 합동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생물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규제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유익할 수도 있다.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의 대체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사용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메칠브로마이드 방사를 감소시켜 환경에 추가적 유익을 제공한다. 소독처리 밀폐 시설 내 높은 CO₂ 또는 낮은 O₂ 농도의 대기는 해로울 수도 있으나, 이 적용에서 환경 영향은 무시해도 좋은 정도이다.

요건

1. 소독처리의 목적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를 사용하는 목적은 특정 효력(efficacy)에서 병해충 사멸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2. 소독처리의 적용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NPPO 직원 또는 소독처리가 수행, 또는 시작되는 해당 국가의 NPPO에 의해 허가받은 소독처리 업체가 수행한다.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수출 전, 수송 중, 또는 반입항에서 적절한 제한(confinement) 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다.

O₂와 CO₂ 농도는 다음의 방법으로 조절될 수 있다:

- (CO₂ 또는 질소(N₂) 같은) 가스를 넣고 이 대기를 유지하여, 대기 내 O₂와 CO₂ 비율을 변화;
- O₂를 포집하는 (iron oxide 같은) 물질을 추가;
- hydrocarbon의 연소를 통하여 O₂를 CO₂로 변환;
- 품목을 밀봉(hermetic) 또는 반밀봉(semi-hermetic) 보관하여, 그 안에서 품목과 감염된 병해충의 호흡이 O₂ 농도를 낮추고 CO₂ 수준을 높임;
- 부분적 진공을 만들어 모든 대기 중 가스 농도를 비례하여 낮춤.

2.1 소독처리 지표(parameters)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를 이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대기 가스 농도 (O₂와 CO₂);
- 소독처리 기간;
- (공기와 품목의) 온도;
- 습도.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밀폐 장소(예, 진공상(chamber), 화물 컨테이너, 창고,

화물 선박 홀드, 포장재(packaging))에서 수행된다. 소독처리 스케줄에 의해 요구되는 대기의 사멸 조건은, 특정 시간 동안 밀폐 장소 전체에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호흡, 대기 가스의 흡착과 품목의 포장재는, 밀폐장소 내 가스 농도 변이를 일으키고,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효력에 영향 할 수도 있다. 이는 소독 처리를 실시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가스 농도가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독처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온도와 습도는, 특히 대상 병해충의 호흡 속도에 영향하기 때문에,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에 필요한 효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고, 소독처리 스케줄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3.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밀폐 장소(enclosures)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밀폐 장소는, 지속적인 가스 흐름 시스템 또는 고정 시스템으로 디자인된, 포장재 또는 이동 가능한 또는 고정형 구조로 구성될 수도 있다.

소독처리 기간 동안 특정 가스 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은, 물질의 투과성(permeability)과 밀폐 장소의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과, 구조 연결(conjunctions) 또는 밀폐 장소의 접합(joins)과 개방구(openings)의 밀폐(seal) 효율성에 영향받는다.

밀폐 장소는 소독처리의 지표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고정형과 이동형 모두에 특별히 설계되고 만들어진 밀폐 장소의 특징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스가 새지 않는 문 또는 가스가 새지 않는 밸브;
- 가스 농도 조절;
- 온도 조절;
- 습도 조절;

- 압력 조절;
- 밀폐 장소 내 대기 가스의 재순환;
- 배출 시스템;
- 기술적 실패(예, 누출)가 있을 때 운영자에 경고하는 시스템.

비활성 가스(inert gas)를 넣어 O₂ 수준을 낮추어 무산소 상태를 만드는 것에 의존하는,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는, 가스가 새지 않는 밀폐 장소나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 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밀폐 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밀폐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소독처리 스케줄에 명시된 대로 소독처리 지표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압력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소독처리 지표 측정

병해충 사멸을 달성하기 위한 소독처리 기간을 통틀어 필요한 소독처리 지표들이 달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독처리 스케줄에 명시된 지표들은 적절한 간격으로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중요한 지표들은, 특히 O₂와 CO₂ 농도, 품목의 온도, 노출 시간이다.

어떤 경우, 습도가 중요한 소독처리 지표로 고려되며, 이 경우 소독처리 기간 동안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압력은 소독처리의 효력에 영향하지 않지만, 음압(negative pressure)이 O₂를 제거하거나 가압이 밀폐 장소 내 O₂를 빠르게 빼내는데(flush) 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소독처리 조건이 달성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다. 압력이 요구되는 소독처리 조건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경우, 압력도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소독처리 지표들의 측정과 기록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생산자의 지침과 적절한 경우 NPPO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보정(calibrated)되어야 한다.

4.1 가스 농도 측정

밀폐 장소 내의 가스 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절한 정밀도(예, 소독처리 내내 달성되어야 하는 가스 농도의 $\pm 5\%$)를 가져야 한다.

4.2 온도 측정과 지도화

밀폐 장소 내 품목과 대기의 온도는,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가 온도 소독처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밀폐 장소의 온도 지도화는 정상적 운영 조건 하(예, 적재와 포장재 관련)에서 온도 변화를 보는데 필수적일 수도 있다

5. 소독처리 시설의 적절한 시스템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해당 소독처리가 대상 병해충에 대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효과적이며, 해당 소독처리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증에 우선적으로 기초한다. 이와 같은 소독처리 시스템은, 해당 소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소독처리 후 품목이 감염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도록 설계, 사용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소독처리가 수행되거나 시작되는(후자는 수종 중 소독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국가의 NPPO는, 그 시스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보증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

5.1 소독처리 업체 허가

소독처리가 수행되거나 시작되는 국가의 NPPO는, 소독처리 업체를 허가하는 책임이 있다. 이 허가는 보통 소독처리 시설과 소독처리 업체 모두를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NPPO는, 직원 훈련, 소독처리 절차, 적절한 장비와 보관 조건을 포함하는, 소독처리 업체 승인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시설, 업자와 품목의 소독처리에 대한 특정 절차가, NPPO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NPPO는 승인된 시설을 포함하여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소독처리 업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2 모니터링과 감사

식물위생 소독처리가 수행되거나 시작되는 한 국가의 NPPO는, 소독처리 시설과 업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책임이 있다. 소독처리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해당 시설, 절차 및 품목의 높은 정도의 시스템 보존성(integrity)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지속적인 소독처리의 감독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모니터링과 감사가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검출하고 수정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소독처리 업자들은 NPPO가 설정한 모니터링과 감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들 요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 미리 약속된 또는 불시의 방문 또는 모두를 포함하여, NPPO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접근;
- 소독처리 기록을 유지하고 정리하여 보관(archive)하는 시스템과 NPPOs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에 접근하도록 제공;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수행될 시정조치.

5.3 소독처리 후 감염 및 오염 방지

화물의 주인은 소독처리 후 감염과 오염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하여 소독처리 업체와 협력할 수도 있다. 소독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소독처리된 품목의 있을 수도 있는 감염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조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 품목을 병해충이 없는 밀폐 장소에 보관;
- 병해충이 들어갈 수 없는 포장재로 즉시 품목을 포장;
- 소독처리된 품목을 분리하고 구분;
- 가능하면 빨리 품목을 송부.

5.4 레이블링

위반 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할 수 있도록, 품목들은 소독처리 더미 번호 또는 다른 구분 표지(예, 포장 장소, 소독처리 시설, 포장 및 소독처리 날짜)로 표시될 수도 있다. 사용되는 경우, 레이블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문서화

소독처리가 수행되거나 시작되는 한 국가의 NPPO는, 소독처리 업체가 절차의 문서를 유지하고, 소독처리 기간 동안 기록된 가스 농도와 온도에 대한 원데이터(raw data)와 같은 적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정확한 기록 유지는 역추적 능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6.1 절차의 문서화

소독처리 스케줄에 따라 일관되게 품목들이 처리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절차들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 소독처리 업체를 승인하는데 필수적인 운영 세부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절차 관리(controls)와 운영 지표들이(parameters) 설정되어야 한다. 보정과 품질관리 절차가 소독처리 업체들에 의해 문서화 되어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독처리 전, 동안과 후 품목 취급;
- 소독처리 중 품목의 방향과 배치;
- 소독처리 지표들과 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
- 가스와 온도 센서 보정;
- 소독처리 실패 또는 소독처리 지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하는 대응 계획과 시정 활동;
- 거부된 더미 취급;
- (필요시) 레이블링, 기록 유지와 문서화 요건;
- 직원 훈련.

6.2 기록 유지

소독처리 업자는 각각의 소독처리 실행의 적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와 확인 목적 또는 역추적이 필요할 때를 위하여, 이들 기록은 소독처리가 수행되거나 시작된 그 국가의 NPPO에 가용하여야 한다.

장비 보정 기록을 포함하는,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정된 대기 소독처리의 적정한 기록은, 소독처리된 더미의 역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최소 1년간은 소독처리 업체들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개별 소독처리 기록은 다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 시설과 소독처리 업체 ID;
- 적용된 소독처리 스케줄;
- 소독처리된 품목;
- 대상 규제병해충;
- 품목의 포장자, 생산자, 수출자와 생산 장소;
- 물건 또는 포장 개수를 포함하는 더미 크기와 부피;
- 소독처리 번호 또는 다른 구분되는 표식 또는 더미의 특징;
- 소독처리 날짜와 기간과 소독처리를 수행한 개인의 이름;
- 가스 농도 또는 농도들, 품목의 온도 그리고 (필요하면) 습도와 압력 같은 다른 대기 지표;
- 소독처리 스케줄에서 관찰된 편차(deviation)와, 적정할 경우, 이로 인해 취해진 활동.

6.3 NPPO에 의한 문서화

실시된 모니터링 검사와 발행된 식물위생증을 포함하여, 모든 NPPO의 절차는 적정하게 문서화되고 기록되어야 하고 최소 1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위반사항 발생 또는 새로운 또는 예상하지 않은 식물위생 상황의 경우, ISPM 13(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통보 지침)에 설명된 대로,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들은 제공되어야 한다.

7. 검사

검사는 수출국의 NPPO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식물위생 수입요건 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수입 시 검사가 수행될 수도 있다.

수출국 NPPO 또는 수입국 NPPO에 의해, 소독처리 후에 살아있는 비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NPPO는 이 생존이 소독처리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추가의 식물위생조치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수입국의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송 중 수행된 소독처리의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다.

8. 책임

소독처리가 수행되거나 시작된 국가의 NPPO는, NPPO 자체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된 소독처리 업체에 의해 수행된 소독처리를 포함하여, 식물위생조치로서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적용을 평가, 승인, 감사할 책임이 있다. 수송 중에 소독처리가 실시되거나 완료된 경우, 보통 수출국의 NPPO가 수송 중 소독처리를 적용하는 소독처리 업체를 허가하는 것에 책임이 있고, 수입국의 NPPO는 소독처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필요한 정도에 따라 NPPO는, 소독처리를 수행하는 직원의 훈련과 증명, 소독처리 업체들의 허가와 소독처리 시설 승인을 포함하여, 조절된 대기 소독처리의 개발, 승인 및 안전에 관련된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NPPO와 다른 규제 당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책임은 중복, 갈등, 불일치 또는 부당한 요건이 없도록 규명되어야 한다.